

「기업파트너 적금 특약」

준법감시인 심사필번호 제2016-약관- 350 호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기업파트너 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‘예금거래기본약관’ 및 ‘적립식예금약관’ 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-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에 한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법인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세기본법 제 13 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합니다.

제 3 조 가입금액

이 적금의 월부금은 1,000 원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.

제 4 조 적립유형 및 저축방법

이 적금은 정기적립식으로 매월 일정한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합니다.

제 5 조 가입기간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월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적용금리

① 이 적금의 금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에 제②항에서 정한 가입우대금리와 실적우대금리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

② 아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. 다만, 최대 우대금리의 합계는 1.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1. 가입우대금리

적금 가입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당 0.2%의 우대금리를 가산합니다. 다만, 최고 0.4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가. 가입일 기준 전전월말부터 과거 3개월간 당행 수출입실적 1백만불 이상인 고객

나. 월 적립금 1천만원 이상 가입고객

다. 당행 신용등급 5(+)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인 고객

2. 실적우대금리

만기해지시 아래의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각 목당 0.2%의 우대금리를 가산합니다. 다만, 최고 0.6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가. 만기 기준 정기예금, CD(양도성예금증서) 합계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
나. 만기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법인명의(동일 사업자번호 기준)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.

다. 적금 가입기간 중 B2B외화팩토링의 주계약자로서 납품대금지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

라. 적금 가입기간 중 Hana 1Q bank CMS PLUS 가입(동일 사업자번호 기준)한 경우

③ 제②항 제 2 호의 만기해지시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일부해지기록이 있는 적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종 만기해지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 7 조 이자지급

① 이 적금의 중도해지이자자는 월부금에 총운용일적수와 소정의 중도해지금리를 곱하고 평년,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
② 모든 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계약액에 대하여 소정의 만기후이자를 지급합니다. 만기일이라 함은 계약 당시의 만기일(제 1 회 월부금 납입일로부터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)을 말하되, 월부금 납입지연으로 인하여 만기연장된 적금은 그 연장된 지급기일을 만기일로 합니다. 단, 실적우대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만기일은 계약 당시의 만기일을 의미합니다.

③중도해지금리와 만기후금리는 일반정기적금의 해당 금리와 동일합니다.